

# 배당요구절차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1. 배당요구시 첨부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비 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문이 필요없는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은 집행문이 없어도 됨)	○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배당요 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부동산 집행 절차에서는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든가를 선택할 수 있음.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 여 확정된 과태료채권도 검사의 집행 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집행이 가능하 므로 여기에 포함되어 배당요구의 종 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음.
경매개시결정이 등 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가압류결정정본+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 도 배당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 148조 제3호).
주 택 임 차 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 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 +주민등록표등본(임차인 본인의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함)+(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계산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런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 받을수있다는 견해가나뉘어 있음.

G	1890	대한법	룔구조	공단
(4-	//			
 ac.or.kr#				
— х			SA ANS	

구 분	첨 부 서 류	申 ユ www.klac.
상가건물임차권자	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세 무서장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 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등록사항 등 의)현황서등본+(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계산서	대작으로 인하여 그 천리가 소설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O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 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확정판결(판결 이유 중에 배당 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 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금품확인원(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②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사용자가 교부, 국민연금법 제77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 소득세법 제143조),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 국민연금법제75조),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발급,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 ⑦~☞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사본(근로기준법제41조) 또는임금대장사본(근로기준법제48조)(다만,이경우에는사용자가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하는등의사유로위 인~~란서면을 발급받을수 없다는사실을소명하는자료도함께제출하여야함)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음. 근로자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인정할수 없음.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경매절차에서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함(재민 97-11).

#### 2. 배당요구신청

-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압류의 효력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체를 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부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임(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집행법원이 정한 때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2)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89조, 제88조 제1항).
- (3)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민사집행법 제146조).
- (4)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이중경매신청인(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 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며 배당에서 제외됨)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다만,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되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저당권·압류·가압 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전세권은 실체법상 존속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이러한 전세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함.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교부받을 수 있음(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 종전 등기부상의 권리자(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결과 공급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할 때 종전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던 부담등기의 권리자).

#### 3. 계산서의 제출

민사집행법 제81조(계산서 제출의 최고)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 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 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1) 각 채권자는 계산서제출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주안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각 채권자가 계산서제출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 생 야 하는 것은 아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기록에 나타다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게 됨.

- (2)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 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함(민사집행법 제 150조 제1항).
- (3) 계산서제출최고에 응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독립된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배당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역을 조사하여 현존 채권액을 확인하려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계산서제출로 종전의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음.

### 4. 배당실시

- (1)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이의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2조).
- (2)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①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②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됨(민사집행법 제154조).

#### (3) 공탁하는 경우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민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 5. 소액임차인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

사 건 번 호 2000타경000호 부동산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소 유 자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채권자(소액임차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배당요구채권 : 금 ㅇㅇㅇㅇ만원

위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채권자(임차인)는 위 배당요구채권 인 임차보증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신청합 니다.

# 아 래

1. 임대차계약일 : 20 ○ ○ . ○ .

2.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소유자) : <

임차인: 000

3. 임대차기간 : 2000. 0. 0.부터 2000. 00. 00.까지(0년간)

4. 임대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ㅇㅇㅇㅇ원

(월세일 경우 보증금 ㅇㅇㅇㅇ원, 월세 금 ㅇㅇㅇ원)

5. 임차부분 : 위 사건 경매목적물 중 건물전부(일부일 경우: ○층 방○칸)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별지에 임차부분을 특정한 내



구조를 그려 첨부)

- 7. 주민등록전입신고일: 20〇〇. 〇. 〇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재)

##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사본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현황서등본)

2000. 0. 0.

위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채권자(소액임차인)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